

遼·金·元代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基郁 · 朴炫局

A Study of the History of Medical Administration for Liao(遼)·Jin(金)·Yuan(元) Dynasty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Kim, Ki-Wook · Park, Hyun-Kuk

Basic summary of the medical administration: First of all, Liao·Jin·Yuan dynasties had broad cultural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that the two traditional medical administrations were closely linked which later formed a system that united as one. Establishment of governmental medical office and governmental medical education organization was the very first attempt in the history of the medical administration. The measure on promoting the social level of medical doctors has an important meaning on the growth of the medical field. Medical policy on prisoners was done under the new condition brought on from experience. Medicine not of China was broadly interchanged, medicine from Arab was spread throughout China, and the department on skeletal injuries and the dietary treatments had major development. At this era, under a overall expansion of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medicine, scholastic dispute on medicine triggered medical expansion.

Key Words: History of Medical Administration, Liao(遼)·Jin(金)·Yuan(元), Han Lin Yuan(翰林院), Tai Yi Yuan(太醫院), Guan Yi Ti Ju Si(官醫提舉司), Yi Xue Ti Ju Si(醫學提舉司), Shang Shi Ju(尚食局), Shang Yao Ju(尚藥局), Zhang Yi Shu(掌醫署), Dian Yao Ju(典藥局), Xing Dian Yao Ju(行專藥局), Guang Ji Ti Ju Si(廣濟提舉司), Hui Min Yao Ju(惠民藥局), Guang Hui Si(廣惠司), Xing Yu Yao Yuan(行御藥院) and Xing Dian Yao Yuan(行典藥局)

I. 序論

본 논문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형성한 秦始皇

으로부터 魏晉南北朝, 劉宋, 隋唐五代, 南宋까지 醫政史에 관한 연구 결과인 中國 醫政史에 관한 연구¹⁾의

* 교신저자: 김기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054-770-2664, kkw@dongguk.ac.kr

1) 金基郁 외3人. 秦漢시기 醫政史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2). 朴炫局 외3人. 魏晉南北朝의 醫政

연속적인 연구 성과이며, 중국 梁峻의 『中國古代醫政史略』 등²⁾을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遼·金·元代의 醫政을 大綱을 살펴보면, 이 시기는 중국의 남과 북의 문화가 내부적으로 광범하게 교류하여, 두 醫政의 傳統이 혼합되는 체계를 점차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官醫提舉司와 醫學提舉司의 설치는 의정 관리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며, 의생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시킨 조치는 객관적으로 의학발전에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죄수에 대한 의약정책 등과 같은 새로운 醫政의 조건하에서 의료경험을 총결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 中外의 의약이 광범하게 교류하였고, 아랍의약이 중국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그 결과 骨傷科와 食餌療法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정치, 경제, 문화, 의학이 발전한 종합적인 배경 아래에서 의학의 학술논쟁이 나타나게 되어 의학발전을 추동하였다.

따라서 논자는 遼·金·元代의 醫政史에 관하여 정치개요, 의약정책, 의약기구, 의약정책과 의학발전과의 관계, 의정에 대한 평가 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보고한다.

II. 本 論

1. 遼·金·元代의 醫政

1) 遼·金·元代의 정치개요

이 시기는 遼·太祖가 916년에 요를 건국한 때부터 明·太祖 洪武 원년(1368)까지 452년이다. 遼·金과 대치한 兩宋 의정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史에 관한 연구. 大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2). 金基郁 외3人. 兩宋時期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大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3). 朴炫局 외2人. 隋唐五代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大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4).
- 2)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朴炫局 외 2人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編). 서울. 一中社. 2004. 洪元植 외1人.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遼는 중국북방의 거란족이 건립한 나라로 북송과 오랜 기간 대치하였다. 거란족은 주로 遼河 상류인 西拉木倫河 유역에 거주했다. 907년 거란부락연맹의 수령 耶律阿保機가 대대적으로 주위의 부락을 합병하기 시작했고 916년에 즉위하여 요를 건국하였다. 阿保機 말년에 渤海를 멸하고 耶律德光이 즉위한 뒤 바로 燕雲 16州를 점거하였다. 960년 조광윤이 陣校驛에서 군란을 일으켜 북송을 건립하고 이 이후 17년 간 중원과 강남에 할거하고 있던 정권을 평정하고 또한 무력으로 연운 16주를 수복하려고 하였지만 979년 高梁河(지금의 北京 城西) 전투와 986년 歧溝關(지금의 河北 潼縣) 전쟁에서 모두 패배하였다. 이 이후에 송과 요는 100여 년간 서로 대치하였다.

宋과 遼가 대치하고 있던 기간에 백두산과 흑룡강 사이에 거주하던 黑水靺鞨族의 후예인 女眞族이 점차 강성해지기 시작하였다. 1115년에 여진족의 完顓부락 수령인 阿骨打가 金나라를 건립하였다. 1116년에 병력을 일으켜 遼陽을 점령하고 1120년에는 遼의 上京 臨潢府를 점거하였으며, 1122년에는 요의 中京 大定府, 西京 大同府, 南京 祈津府(지금의 북경)를 점령하였다. 1125년에 금이 요를 멸하였다. 다음해 금나라 군사가 송의 수도인 開封을 공격하였고 1127년 4월에 북송이 멸망하였다. 5월에 趙構가 歸德(河南商丘)에서 황제로 옹립되어 南宋을 건립하였다. 이때부터 다시 송과 금의 100여 년간의 대치국면이 지속되었다. 兩宋은 요와 금과 대치하였고, 동시에 중국 서북부에는 탕구트족(黨項族)이 건립한 西夏정권이 있었다.

송과 금이 대치하던 즈음에 북방의 몽고족이 일어났다. 1206년에 칭기즈칸(成吉思汗)이 각 부족을 통일하여 건국하였다. 이후 남쪽을 향해 대규모로 공격하여 西夏와 金의 정권을 잇달아 멸망시켰다. 1271년 몽고족 통치자가 국호를 “몽고”에서 “大元”으로 바꾸었다. 1279년에 원은 남하하여 남송을 멸함으로써 북송이 요·금·서하와 대치한 오래 분열된 국면이 종결되고 다시 통일을 실현하였다.

요(遼), 금(金), 원(元) 3개의 왕조는 모두 중국북방의 3개의 소수민족이 건립하였기 때문에 이 세 왕조

의 정치제도는 모두 각 민족의 원래 제도와 漢의 제도가 뒤섞여서 결합된 산물이었다. 요의 官制는 遼官과 漢官 두 개의 큰 체계로 나뉘었다. 요관은 北面官이라 칭하고 한관은 南面官이라 하였으며 북면관은 또한 “分北, 南院。北面治宮帳, 部族, 屬國之政, 南面治漢人州縣, 租賦, 軍馬之事”³⁾하였다. 遼官에서 北南 양쪽의 최고기구는 각각 北南樞密院과 北南宰相府였다. 漢官은 唐宋제도와 같아 최고 관리 기구는 中書省(처음의 명칭은 政事省임)이었다. 금 왕조의 정치제도는 기본적으로 요와 송의 옛 제도를 채택하였다. 중앙에 尚書省을 설치하여 국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아래에 六部를 설치하였다. 군사 방면에는 “都元帥府”를 설치하고 후에 樞密院으로 개명하였다. 원 왕조의 정부조직은 당송의 제도를 계승하였고 金朝의 통치경험을 흡수하였으며 몽고의 옛 제도를 답습하고 또한 조정하여 발전시켰다. 중앙의 일급행정기구인 三省을 中書省인 一省제로 바꾸고 그 아래에 六部를 설치하였다. 원대 중앙 군사 기구는 樞密院이었다. 원대에는 종교를 중시하여 중앙에 종교기관을 총 관리하는 “大禧宗禮院”을 설치하였다. 원대 지방행정기구의 최고 일급기관은 行中書省(간단히 줄여서 行省이라 함)이며 행성 아래 路, 府, 州, 縣을 설치하였다.

요컨대 遼·金·元 시대는 남으로 확장하고 중원의 한족문화와의 교류와 융합이 대대로 심화되었다. 따라서 의정방면에서도 이 시기에 뒤섞이고 결합된 복잡한 국면이 나타나게 되었다.

2) 남북 의약정책

(1) 의생을 보호하고 약물 공납에 따른 의약교류 확대

遼·金·元시기 전쟁이 매우 잔혹하여 많은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거나 다쳤다. 그러나 遼·金·元 정부는 전쟁 중에서도 의생과 工匠 등 기술 인력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元世祖인 쿠빌라이는 至元12, 13, 18년 세 차례에 걸쳐 使者를 江南으로 파견하여 명의 등 전문기술 인력을 모집하였다. 지원 18년(1281)에는 詔令

3) 托克托 等奉勅撰. 遼史 卷45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8*330.

을 내려 “前代聖之後, 儒醫薦筮, 通曉天文曆數, 並山林隱逸之士”⁴⁾를 찾았다. 그 중에 유가와 의사도 보호 대상이었다. 이 밖에 원의 통치자들은 “軍中求儒·道·釋·醫·薦者”⁵⁾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이 의생 등 기술 인력을 찾은 이유는 통치를 위한 차원이었다.

遼·金·元의 통치자들은 전쟁 중에 의생과 藝匠 등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전쟁 기간이 아닐 때에도 江南과 국외 등지에서 의생을 초청하고 의서를 구하였다. 遼·天顯 12년(937)에 “十一月己未, 遣使求醫於晉……己丑, 醫來”⁶⁾하였고, 紹和 19년(1001) 봄 정월에 “回鶻進梵僧名醫”⁷⁾하였고, “初契丹醫人鮮知切脈審藥, 上命庶成譯方脈書行之, 自是人皆遁習, 雖諸部族亦知醫事”하게 하였다⁸⁾. 宋과 遼가 대치하기 이전인 五代 시기에는 요에 대해 방어태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항상 요에게 금은 재물과 약물을 공납하였다. 遼應 3년 (953) 즉 後周 廣順3년 “九月庚子漢遣使貢藥”⁹⁾하였다. 遼·神冊 5년(920)부터 遷歷 4년(954)까지 30여 년 동안 五代정부와 남방에서 할거한 정권은 遼에게 香藥, 茶約, 犀角, 珊瑚 등 진기한 약물을 여러 차례 공납하였다. 金朝 통치자 역시 거금을 들여 전국 각지로부터 의생을 초빙하고 방약을 수집하였다. 金·賢元 원년(1153) “四月大氏有疾, 詔以錢十萬貫, 求方藥”¹⁰⁾하였다. 이 시기 중원의 많은 지역에서 매년 통치자에게 대량의 약물을 공납하도록 하였다. 元朝의 세력이 확장되는 시기와 통일 이후에도 의사를 소집한 규모와 약물공납을 접수한 수량이 遼·金시기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시기에 “楚材奏

4)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1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564.

5)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158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5*144.

6) 托克托 等奉勅撰. 遼史 卷3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8*44.

7) 托克托 等奉勅撰. 遼史 卷14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8*106.

8) 托克托 等奉勅撰. 遼史 卷89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8*637.

9) 托克托 等奉勅撰. 遼史 卷6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8*64.

10) 托克托 等奉勅撰. 金史 卷63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1*7.

選工匠及奏業釋道醫薦者遷於河北，官爲贍給”¹¹⁾하게 하여 정부의 허가를 얻었다. 세력이 확장되면서 새로 귀속된 주변국과 지역 역시 경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元朝에 의원과 약물 등을 공급하였다. 예를 들어 安南國에 “自中統四年(1263)爲始，每三年一貢，可選儒士醫人及通陰陽薦筮，諸色人匠，各三人，及蘇合油，光香……等物同至”¹²⁾할 것을 요구하였다. 至元 12년(1275)에는 “再使其國(李羅國)與其國師以名藥來獻，賞賜甚厚……二十四年(1287)得其良醫善藥”¹³⁾하였다. 至元 28년(1291) 10월 “癸未羅鎬國王遣使上表，以金書字，仍貢……象齒……犀角……龍腦等物”¹⁴⁾하였다. 이밖에 점령한 海南의 제국·咀南蕃邦·回吃 등지에서 무소뿔이나 상아 등 귀중한 물품을 헌납하였다. 원의 통치자들이 의생을 보호하고 초빙한 정책은 中外 각 민족의 명의들이 주위에 모여들게 하였다. 예를 들어 景教를 신봉하는 아랍 의사에는 撒麻耳幹(지금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명의 撒必과 페르시아의 의생 麥術督丁 등이 있었고, 한족 의생으로는 許國楨·鄭景賢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의생들이 전란 중에 보호받아 살아남게 되었다. 이밖에 전국 각지와 바깥 지역의 수많은 국가들이 元朝에게 진기한 약물을 바쳤고 본초약물의 교류는 공전의 수준에 이르렀다. 의생의 보호, 약물의 광범한 교류는 이 시기의 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달렸다.

(2) 의생의 지위 제고

兩宋시기에 의학 및 의생의 지위가 비교적 제고되었고 遼·金·元시대에는 의생들의 지위가 한층 공고해졌다. 원대에는 민족 차별과 계급적인 압박이 심하였다. 원대에는 각 민족의 백성들을 10등급으로 나누었다. 즉 一官, 二吏, 三僧, 四道, 五醫, 六工, 七獵, 八匠,

11) 景仁文化社 編. 新元史 卷127.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1264.

12)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20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5*716.

13)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13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4*388.

14)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1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2*232.

九儒, 十丐(남송의 遣民인 鄭思肖의 말에 근거한 것임) 등으로 나누었다. 의생은 다섯 번째에 속하여 僧·道 다음이었다. 至元 9년(1272)에는 또한 “詔免醫戶差徭.”¹⁵⁾하게 하였다. 이 이외에 원대 궁정의관의 품계가 과거 어떠한 왕조보다 높았다. 至治 2년(1322)에 규정된 품계는 태의원 院使 정2품, 同知 정3품, 偉院 종3품, 同僉 정4품, 院判 정5품 …… 이었다. 태의의 품계에는 15단계가 있었다. 保宜大夫, 保康大夫는 종3품, 保安大夫, 保和大夫는 정4품, 保順大夫는 종4품, 保衡大夫는 정5품 …… 廣惠司提舉는 정3품, 謹藥院 達魯花赤은 종5품, 醫學提舉司 提舉는 종5품, 典醫監 達魯花赤은 정3품이었다. 나열된 수많은 의관들의 품계를 통하여 원대에 의관의 품계가 보편적으로 제고되어 과거 왕조보다 훨씬 높아져 개별적인 몇몇 의관의 품계가 높아진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 몇 가지 방면에서 원대 의생은 전체 백성들 가운데에서 등급이 비교적 높았고, 원대 의관의 품계는 다른 왕조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으며, 醫戶는 노역을 면제받았다. 상술한 사실은 원대 의생의 지위가 역대 왕조 가운데 가장 높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의약을 중시하는 원대 황제와 대신들의 목소리가 송대만큼 높고 또한 깊은 영향을 끼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원대에는 실질적으로 의생의 등급이 제고되었고, 의관의 품계와 대우가 높아졌으며, 의생을 우대하는 각종의 조치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으로 의생의 지위가 높아진 것은 의학발전에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대에는 사회적인 등급, 관품의 등급 등의 방면에 있어서 의생의 지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종 조치를 취하여 의생의 수준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어 選試와 등록을 거치지 않은 의생들은 의술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至大 4년(1311년) 윤7월에 “禁醫人非選試及著籍者，毋行醫藥”¹⁶⁾하게 하였다. 의생의 자손은 조상의 업을 계승하여 의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업무에 반드시 정통해

15)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2*87.

16)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2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2*359.

야했다. 延祐 7년(1320) 3월에 “罷醫·薦·工·匠任子, 其藝精絕者擇用之”¹⁷⁾라고 칙령을 내렸다. 至治 3년(1323) 丙辰에 또한 “醫·薦·匠官·居喪不得去職, 七十不聽致仕, 子孫無蔭敘, 能紹其業者, 量材錄用”¹⁸⁾하도록 조령을 내렸다. 의생이 환자를 치료하다 죽게 하면 죄로 다스렸다. 至元 7년 7월 北京路 의생인 焦轉僧이 陳某의 질병을 치료하여 효험을 못 보고 사망하자 審判官은 焦轉僧에게 杖刑 77대로 다스렸고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불하게 하였다. 같은 해 4월 太安州 李忠割이 瘟病을 수술하다가 환자를 사망케 하자 장형 47대의 벌을 받았으나 장례비는 추정하지 않았다. 총괄하면 이상의 각종 조치들을 통해서 의생의 소질이 제고됨으로써 다른 각도에서 의생의 지위가 제고되었다.

(3) 의약 질서를 확립

원대에는 의생의 지위와 수준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의사를 사칭하여 침술과 의술을 함부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짜 약품과 독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至元 5년(1268) 12월 14일에 大醫院 提點이 聖旨를 받들 것을 주청하고 中書省의 힘을 빌어 “嚴行禁約開張藥鋪之家, 內有不畏公法之人, 往往將有毒藥物如烏頭, 附子, 巴豆, 硝霜之類, 尋常發賣與人, 其間或有非違殺傷人命及不習醫道諸色人等, 不通醫書, 不識藥性, 欺狂俚俗, 假醫爲名, 規圖財利亂行針藥, 誤人性命. 又有一等婦人專行墮胎藥者, 作弊多端.”¹⁹⁾하다고 하여 이를 근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주청은 황제의 비준을 얻었다. 지원 6년(1269)에는 “今後凡有村野說謠, 聚眾打當, 行醫不通經書, 不著科目之人, 盡行禁斷. 庶免妄行針藥, 誤人性命. …… 諸科目人各令務本業, 遇有患人, 依經方對證用藥或針灸看治 …… ”²⁰⁾하도록 칙령을 내렸다. 지원

17)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27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2, 394.

18)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28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2, 413.

19)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元典章 57 刑部 卷 19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944.

20)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元典章 57 刑部 卷 19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945.

9년(1272) 8월 26일과 10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가짜 약과 독약의 매매를 금지하는 조령을 내려 독약 매매자한 사람에 대해 각각 杖刑 67대로 다스리도록 하였고 지원시기 화폐로 100兩을原告人에게 배상하도록 하였다. 至大 4년(1311)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砒霜·巴豆·烏頭·附子·大戟·芫花·蒺藜·甘遂·側子·天雄·烏喙·蕘若子”²¹⁾ 등 12종 약물을 독약으로 규정하고 판매를 금지시켰다. 皇慶 원년(1312) 7월 14일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잡기를 시연하여 민간인을 유인하여 약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경서에 통달하지 못하고 약성을 모르면서 함부로 용약하거나 침이나 뜰을 시술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금지시켰다. 元代에 침술을 무분별하게 행하고 가짜 약과 독약 판매를 금지시킨 일련의 조치는 가짜 의생과 불량한 독약의 판매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었고, 또한 의약질서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4) 죄수의 의약에 관한 정책

隋唐시대 아래로 봉건왕조사회의 법률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죄수의 질병 문제에 대해 몇몇 제도가 제정되었다. 元代는 唐宋시대에 죄수의 의약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계승하고 실제로 근거하여 죄수 의약에 관한 일련의 정책규정을 제정함으로써 元朝 의정의 내용이 풍부해졌다. 中通 4년(1263) 7월에 정부는 “囚病患, 主司申提, 牢宮驗實, 於本處醫人內輪番應當看治. 每日一替, 若有死者, 委官驗復有無他故, 推治施行”²²⁾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婦人犯罪有孕, 應拷及決杖笞者, 須候產後百日決遣, 臨產月者, 召保, 聽候出產二十日復追入禁, 無保及犯死罪, 產時令婦人入禁有待.”²³⁾할 것을 규정하였다. 지원 6년 4월과 지원 13년 3월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죄수의 의약 및 임부의 出禁 분만 등의 문제를 강조하여 中通 아래로

21)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元典章 57 刑部 卷 19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946.

22)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元典章 40 刑部 卷 2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678.

2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元典章 40 刑部 卷 2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680.

죄수에 대한 의약정책의 실천을 보장하였다. 지원 23년(1286) 5월에 禦使臺에서 中書省의 자문을 받아 剷付·會驗 각 路에서 죄수에게 금지된 것을 발견하여 죄수가 병에 걸려도 관리들이 약을 주지 않고 다만 거짓으로 약을 가감한 숫자를 보고한다고 하였다. 이에 정부는 다시 영을 내려 병에 걸린 죄인을 관리할 때는 “即令良醫對證用藥看治。其加減分數次第逐旋申報。其所用藥物。官爲應付。如藥餌不真。罪在醫工。夏日須要將牢房掃酒涼淨。冬日溫暖。將罪囚非理苦虐。如有不行依前提控牢獄或提控不嚴及罪囚患病不即申報看治。……獄官……輕者責罰。重者別議施行……”²⁴⁾하게 하였다. 元貞 3년(1297) 정월 監察禦使가 보고한 것에 따라 禦使臺에서 행한 것이 강남 府州使縣의 죄수가 강북보다 많았다. 중형은 종종 판결을 거치지 않고 미완인 채 죽였다. 법에 따라 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으며 가벼운 죄를 진 죄인 역시 감옥에서 맞아 죽는 것을 관리들은 일상적인 일로 보았다. 중간에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고 원통하고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 정부는 “今後嚴肅各處官司。如有必合監禁之人疾。早追問判斷。勿致淹禁。遇疾病則罪輕者召保。罪重者令醫看治。仍令親屬入侍。期於痊愈或有不幸身故。於月內報明白開寫某人囚犯何罪。自幾年月日收禁。追會其事未完。自其日因是何病症。是何醫工對何親屬及日申病症分數。身死月日。行移某處。官司初復檢驗有無他故。如此備細牒呈廉訪司一一照勘得。如有不應監收而監收。應疏決而不疏決及非理死損者。嚴刑究治。仍每歲終具死訖罪囚數目開申。”²⁵⁾하도록 재차 강조하였다. 大德 4년(1300) 2월에 정부는 지방에서 보고된 죄수의 질병 통계가 부실함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강남의 경우 병의 경증에 따라 10%~30%에 이르는 것은 10%로 40%는 20% 등으로 보고하여 사람의 생명을 그르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겨냥해서 정부는 병에 걸린 죄인에 대한 통계의 표준과 보고의 요구사항을 다시 통보하였다. “依腹裏講究定體例。至七分爲重

24)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元典章 40 刑部 卷 2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684.

25)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元典章 40 刑部 卷 2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p.684~685.

證。合古人治病之理爲此行據。官醫提舉司講究得罪囚初病作二分申報。增至九分爲死證。……罪囚患病理宜從實中報。容請照驗施行”²⁶⁾할 것을 규정하였다. 죄인에게 사용하는 약물 문제는 大德 9년 9월 정부는 “惠民局內給付”²⁷⁾에 따를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죄인의 의약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연이어 약간의 조례를 규정하였지만 국가기관의 몇몇 기구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러한 규정들이 철저히 관철되지 못하였다. 湖廣, 江浙, 江西 등지에서는 여전히 한여름에 감옥을 관리하지 않아 악취가 진동을 하였고 죄인들이 역병에 걸려도 관리들이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을 死傷시켰다. 大德 11년(1307) 정월 22일 이후부터 大元 원년(1308) 10월 말까지 총 33건 106명의 죄인이 죽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또한 大德 9년(1305) 8월과 至大 2년(1390) 2월에 보다 주도면밀한 조치를 채택하여 “病囚親屬常切看視湯藥飲食。仍取用過藥方品味。分兩制度同六脈之數。治法源流。病勢增減。結罪文狀。倘遇死損逐一開坐。令官醫提領。醫學教授一同仔細考校。但診脈處方用藥。治療稍涉不如法者。隨時究問。如果精通方脈。治效經年。量囚多寡。保充醫職。仍每季依前備牒。官醫提舉司更爲考證。若有差錯。其由回報。如提舉司考驗不當。罪亦及之。夫如是則枉禁淹延。迅其簿書。非理死損。考其治法。既有司官醫互相警懼。各知罪有所歸。庶使囚無冤滯。死不非理。”²⁸⁾하게 하였다.

죄인에 대한 의약정책이 부단히 완비됨에 따라서 法醫도 이 시기에 상당히 발전하게 되었다. 成宗 貞元 2년(1296)에 정부가 각 路에 명하여 儒吏를 매년 2명 천거하여 廉訪司에서 시험을 거쳐 선발하도록 하고 또한 儒吏의 고시격식을 규정하였다. 그 중에서 범죄의 증거에 따른 법률과 감정을 반드시 정통해야 하는 업무로 삼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屍는 勒殺, 毒殺, 刺殺 등 시체의 변화를 자

2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元典章 40 刑部 卷 2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678.

27)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元典章 40 刑部 卷 2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678.

2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元典章 40 刑部 卷 2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679.

세히 기록한다. 둘째. 傷은 눈을 다치거나 주먹에 의한 상처 등을 식별한다. 셋째. 痘은 골절, 사지의 상처 등을 묘사한다. 넷째. 物은 死傷케 하는 돌·가죽 따·칼날 등의 물증에 대한 감정 등이다.

이상의 시·상·병·물의 범죄 증거는 모두 醫工이 검사하고 죄를 판결하는 증거로 삼았다. 法醫의 발전은 죄인에 대한 의약정책을 실천한 것이다.

상술한 것을 종합하면 元朝는 당송시기 죄인에 대한 의약정책 규정을 계승한 것을 바탕으로 元代의 실제 상황과 결합시켜 당송보다 더욱 상세하게 죄인에 대한 의약정책을 제정하였다. 이는 당시 형사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봉건왕조사회에 있어서 범죄인에 대한 의약정책과 규정을 풍부하게 하고 완벽을 기하는 경험을 누적시켰다.

(5) 유행병과 대책

遼·金·元시대는 전쟁이 빈번하였고 역병이 창궐하였던 시기이다. 그러나 이 세 왕조에 대해 말하자면 왕조가 바뀔수록 더욱 심해지는 추세였다. 즉 遼代의 역병 유행이 금원시기보다 덜하였다. 史書의 기록에 근거하여 요·금·원시대에 역병이 유행한 상황을 아래와 같이 【표 1】로 나타내었다. 遼·金과 대치한 북송과 남송의 관할지역에 유행한 상황은 포함하지 않았다.

【표 1】은 불완전한 통계이지만 이를 근거하여 요·금·원시대에 역병이 유행한 대략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遼代에는 기록이 소홀하였기 때문에 『遼史』에 역병이 단지 한 차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하면 기록이 누락되긴 하였지만 역병이 그다지 많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遼代에 역병의 횟수가 매우 적었던 원인을 추측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이 있다고 본다. 우선 唐代 3백여 년간에는 상대적으로 사회가 안정되었고 당 정부가 遺骸를 매장하고 역려의 유행을 예방한 조치 등을 후대(요를 포함)에 역병의 발생을 줄이는 기초가 되었다. 다음으로는 요나라의 관할구역이 중국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唐末 및 五代의 전쟁 또한 遼가 관할하는 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기 때문에 殘骸와 부패한 시체 등 역병의 痘源도 상대적

으로 적었다. 그 다음으로 요가 관할한 구역은 지역은 넓은데 반해 사람은 적어서 질병이 발생하여 유행하더라도 널리 전파되지 않아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없었다.

金代는 遼代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병이 증가했고 또한 피해도 상당히 심했다. 1213년과 1232년에 汴京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역병은 사망자 수가 백만 명에 이르렀다. 금대에 이와 같이 심각한 역병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원의 군대가 汴京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의약이 부족하였다. 그 근본 원인은 五代 및 宋遼가 대치한 아래로 중원에 전란이 비교적 잦았고 인구밀도가 높은데 비해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이 변경에 두 차례의 큰 역병이 발생하는 조건이 되었다. 금대 초기 정부는 역병의 통제에 힘을 기울였다. 天德 3년 역병이 발생했을 때는 금 왕조가 바야흐로 홍성하기 시작하여 차츰 남쪽으로 진출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강력한 힘을 가진 정권이 강력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당시 金朝 집정자인 海陵王 先頤亮이 조칙을 내려 “發燕京五百裏內醫者，使治療，官給藥物，全活多者與官，其次給賞，下者轉運司舉察以聞”²⁹⁾하도록 명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 역병이 폐지는 것을 통제하였고 손실도 줄였다. 그러나 金代 후기의 통치자들은 한편으로는 원의 공격에 대처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치력이 부족하였다. 변경에 2차례 큰 역병이 발생하여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사망자가 매우 많았다.

元代에 발생한 역병은 불완전한 통계이긴 하지만 적어도 26차례나 있었다. 元朝가 100여 년 간 통치하는 동안 평균 5년마다 1차례 역병이 발생하였다. 원 말기에는 역병이 더욱 급속히 만연하여 明宗 天歷 2년에서 惠宗 至正 20년까지 31년 동안에는 15차례 발생하였다. 지정 12년에서 20년까지 9년 동안에 8차례의 역병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심각한 역병은 원대 통치자가 그때그때에 양식을 방출하여 구제한 것을 제외하고 의약방법의 조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준비된 약으로 환자들을 구제한 경우

29) 托克托 等奉勅撰. 金史 卷83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1*208.

【표 1】 요·금·원시대 역병유행상황 통계표

왕조	溢號	중국 기년	서기	유행상황	
遼	聖宗	開泰8	1019	燕지역에 기아와 역병이 돌자 백성들이 대부분 떠돌아다니다 숨어 죽었다.	
金	海陵王	開德3	1151	여름철에 접어들자 부역자들 가운데 역병환자들이 많았다.	
		正隆6	1161	여러 道에서 工匠을 징발하여 京師로 보냈는데 역병으로 죽은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宣宗	貞祐1	1213	9월 元의 군대가 淄京을 포위하고 大疫이 가해져 淄城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백여 만 명에 이르렀다.	
	哀宗	天興1	1232	淄京에 大疫으로 50일간에 죽어서 성문을 나간 자가 90명이나 되었다.	
元	太宗	9년	1237	懷州에 역병이 발생.	
	世祖	至元11	1274	江陵 성안에 역병이 발생하였다.	
	忽必烈	至元14	1277	강남에 大疫이 발생	
		至元15	1278	河南에 사신을 보내어 역병을 통제하였다.	
	成宗	大德1	1297	河間의 樂壽 交河에 역병으로 사망한 이가 6,500 여 명이었다. 眞定과 順德에 가뭄과 역병이 발생하였고, 般陽에 기아와 역병이 발생하였다.	
	武宗	至大1	1308	봄에 紹興, 慶元, 臺州에서 역병으로 죽은 자가 2만6천여 명이나 되었고 江浙에도 瘦癘가 크게 발생하였다.	
		至大2	1309	丙申에 禦使臺 臣이 올 연말 歲凶하여 民役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仁宗	皇慶2	1313	겨울, 京師에 큰 역병이 발생.	
明	英宗	至治1	1321	경사에 역병이 발생.	
		至治2	1322	岷州에 가뭄과 역병이 창궐하여 이를 구제하였다. 2월 甲子일에 恩州에 수해가 발생하여 백성들이 기아와 전염병에 시달렸다.	
	泰定帝	泰定2	1325	岷州에서 봄에 역병 발생.	
	明宗	天曆2	1329	集慶 河南의 府·路에 가뭄과 역병이 발생.	
文宗	文宗	至順1	1330	8월 庚戌일에 河南의 府·路와 新安의 沔池 등 15개 驛에 기아와 역병이 발생	
		至順2	1331	역병으로 죽은 자가 19명이었다.	
		至順3	1332	溪洞의 軍民이 관리의 말에 按撫되고 宜山縣에 소속된 곳에 餓疫으로 죽은 자가 많았다.	
元	惠宗	元統2	1334	庚子에 杭州, 鎮江, 嘉興, 常州, 松江, 江陰에 수해와 가뭄으로 역병이 퍼짐	
		至正4	1344	福州, 邵武, 延平, 汀平 4개 郡에 여름과 가을에 큰 역병이 발생	
		至正5	1345	봄과 여름에 濟南에 큰 역병 발생	
		至正12	1352	정월에 冀寧 保德州에 큰 역병이 발생하고 여름에는 더 큰 역병이 발생.	
		至正13	1353	黃州, 饒州에 큰 역병이 발생, 12월 大同路에 큰 역병이 발생	
		至正14	1354	여름 4월 江西, 湖廣에 큰 기근이 발생하고 瘦癘를 앓는 백성이 매우 많았다.	
		至正16	1356	봄, 河南에 역병이 발생	
		至正17	1357	6월 芜州 懷陰縣에 역병이 발생	
		至正18	1358	여름, 汾州에 큰 역병이 발생	
		至正19	1359	봄과 여름에 鄭州의 原縣, 芜州의 沂水, 日照 두 縣 및 廣東 南雄路에 큰 역병이 발생.	
		至正20	1360	여름, 紹興의 山陰, 會稽 두 현에 큰 역병이 발생.	
소계 : 『遼史』·『金史』·『元史』에 기재된 것에 근거한 통계:					
역병횟수 : 요 1차례; 금 4차례; 원 26차례이다.					

도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至元 14년(1277)에 “江南大疫, 帥顏出粟募民, 弪屍坎窟, 可醫食者, 親撫視以活之 …… ”³⁰⁾하였다. 지원 15년에 “中書省宣使, 奉使河南, 適大疫, 義堅亞禮命村坊構室廬, 備醫藥, 以畜病者, 全活甚眾.”³¹⁾하였다. 이러한 관리의 행동이 당시 역병의 유행을 통제하고 병자를 구조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元朝 전반에 대해 말하자면 적어도 26차례나 역병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어떠한 통제나 예방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이는 원대 통치자들이 역병 유행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있다.

3) 남북 의약기구

(1) 遼·金代의 의정과 元代에 미친 영향

요·금·원의 의약기구 설치는 한편으로는 세 왕조 사이에 의약기구를 설치한 경험을 계승 발전시킨 과정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세 왕조는 당송시대의 의약기구체계와 결합시켜 형성된 새로운 조직형식과 이러한 형식을 계승 발전시킨 과정을 거쳤다. 이 때문에 이 시기의 의약기구체계는 당송의 문화전통을 계승한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 왕조 각자 민족문화의 특징도 있다.

『遼史』에는 요대의 典章制度에 관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다. 요의 관체는 北面官과 南面官 양대 계통으로 나뉘어 있고 북면관은 遼官이고 남면관은 漢官이다. 북면관에는 또한 北·南兩院으로 나뉘어 北院은 宮衛, 部族屬國의 일을 주관하였고, 南院은 한인들의 州·縣의 일을 관장하였다. 북면관에서 북원과 남원의 최고기구는 北南樞密院과 南宰相府이다. 남면관은 기본적으로 당송시대의 제도와 같고 다만 中書省의 처음 명칭이 政事省이었다. 이 이외에 漢人의 行宮都部署院과 十二宮南面行宮都部署司를 설치하였는데, 한인이 거란의 본부 조직에 참가하는 기구였다. 遼代의 의약기구 설치에 특징이 있다. 요

관 계통인 북원 部族官의 内府에 客省, 器物, 獸醫, 太醫 4국이 있고 太醫局 장관은 “太醫局都林牙”³²⁾이다. 이 국은 북원에 설치되어 요 왕조의 의정을 주관하는 기구이다. 이 이외에 궁에는 湯藥小底 등의 의관이 설치되어 있었다(小底는 요대 궁정내부 직명의 속칭임). 南面官에 있는 翰林院에 翰林醫官을 설치하였고, 內侍省 아래에 湯藥局을 두었고 탕약국의 장관은 “都提點”이라 하였다.

金代의 관체는 초기에는 자신들만의 간단한 칭호만 있었으나 熙宗 때에 모두 폐지하였다. 태종 때부터 요와 송의 옛 제도를 점차 담습하기 시작하여 漢官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약간 다른 점은 尚書省에서 정무를 모두 관장하고 中書省 門下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六部의 관체는 대체로 이전의 것을 계승하였다. 금의 제도는 계통성이 부족하여 종종 일에 따라 관직을 설치하여 가지를 치는 폐단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惠民司는 탕약을 관장하지만 또한 禮部에 예속되었다. 金代의 의약기구의 설치는 遼代에 비해 두루 갖추었다. 금대에 처음으로 太醫院을 설치하여 요의 태의국을 대신하여 의정과 의약사무를 주관하였다. 태의원은 宣徽院에 예속되어 “提點, 正五品; 使, 從五品; 副使, 從六品; 判官, 從八品. 掌諸醫藥, 總判院事”³³⁾하였다. 管勾은 종9품이고 이를 설치한 것은 의학교육과 관련이 있다. 금대 태의원은 의학교육의 기능을 겸하고 있었다. 당시의 의학은 이미 10개의 과로 나뉘어 태의원에 의학생 50명이 있어 10명이 되는 과에 管勾 1명을 두었다. 10명이 안될 때에는 합쳐서 10명이 되어야 다시 설치하였다. 관구는 반드시 의술이 정통한 사람이 맡았다. 지방의학이 이 시기에도 설치되었다. 예를 들면 “大興府學生三十人, 餘京府二十人, 散府節鎮十六人, 防禦州十人; 每月試凝難, 以所對優劣加懲勸, 三年一次, 試諸太醫, 雖不系學生, 亦聽補”³⁴⁾하였다. 금대에 중앙과 지방에 의학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학생의 숫자는 비교적 적었고 같은 시기의 南宋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이 이

30) 景仁文化社 編. 新元史 卷239.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2132.

31) 景仁文化社 編. 新元史 卷136.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1326.

32) 托克托 等奉勅撰. 金史 卷5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0~679.

33) 托克托 等奉勅撰. 金史 卷5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0~630.

외에 태의원에는 또한 正奉上太醫, 副奉上太醫, 長行太醫가 상설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관 이외에 태의원에 醫散官을 두었는데, 天眷(1138~1140)의 제도에 따르면 의산관은 종4품에서 종9품까지 모두 11개 등급으로 되어 있었고 각 품계마다 上·中·하 혹은 上·하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래에 【표 2】로 나타낸다.

【표 2】 금대 醫散官의 명칭과 품위표

관품	상	중	하
종4품	保宜大夫	保康大夫	保平大夫
정5품	保顧大夫	保安大夫	保和大夫
종5품	保善大夫	保嘉大夫	保順大夫
정6품	保合大夫		保衡大夫
종6품	保愈郎		保全郎
정7품	成正郎		成安郎
종7품	成順郎		成和郎
정8품	成愈郎		成全郎
종8품	醫全郎		醫正郎
정9품	醫效郎		醫候郎
종9품	醫痊郎		醫愈郎

금대 궁정 내의 의약기구로는 禦藥院과 尚藥局이 있었다. 여약원은 明昌 5년(1194)에 설치하였다. 그 장관은 “禦藥院提點, 從五品, 直長正八品, 掌進禦湯藥”³⁴⁾하였다. 이밖에 정9품인 都監을 두었고 이러한 의관은 측근인 환관이 맡았다. 상약국은 宣徽院에 예속되어 “尚藥局提點, 正五品, 使, 從五品, 副使, 從六品, 掌進湯藥茶果”³⁵⁾하였다. 금대에 태후 및兩宮의 官屬에 “醫令, 正人品, 醫丞, 正九品”³⁶⁾을 두었다. 모두 哀宗 正大 원년(1224)에 설치되었다.

34) 托克托 等奉勅撰. 金史 卷5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0*679.

35) 托克托 等奉勅撰. 金史 卷5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0*679.

36) 托克托 等奉勅撰. 金史 卷5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0*692.

황후 아래에 掌饌, 奉饌 각 한 명씩 두고 음식과 탕약 및 酒醴, 약재와 과실의 관한 일을 주관하였다. 이러한 醫職은 보통 尚藥局, 太醫院 의관들이 겸임하였다. 詞事院의 東宮官에 속하는 “侍藥, 正八品; 奉藥, 正九品, 承奉醫藥”³⁷⁾하였다. 궁녀와 女官 직원의 품계는 당의 제도에 따랐고 醫官으로는 “司藥二人, 典藥二人, 掌藥二人, 女史二人, 掌醫藥.”³⁸⁾하였다. 금은 송의 洹京을 공격하여 합락시키고 徽宗과 欽宗을 사로잡았고 동시에 송의 궁정 내에 諸科의 의생 수백 명을 포로로 잡았고 또한 의서와 약물도 약탈하였는데 송 태의국에 있던 靈寶丹만 해도 2만8천7백여 개나 되었다.

태의원과 궁정의 기타 의약기구들의 설치한 것 이외에 금대에는 또한 禮部 아래 惠民司를 설치하여 탕약의 제조와 판매를 주관하였다. 의관에는 令, 直長, 都監 등이 있었다. 大定 3년(1163)에 관리가 주청하길 혜민사에서 들어오는 돈의 이자로 관리들의 봉급을 주기에도 모자란다고 하였다. 그러나 金世宗은 혜민사를 설치한 의도가 백성들의 질환을 구제하는 것으로 폐지시킬 수 없다고 하여 다만 감원만 하였다.

요·금 시기에는 남북의 문화가 널리 교류하고 융합하였다. 요·금 왕조는 당 아래로 한족 봉건통치자가 의약기구를 설치한 경험을 수용하고 자기 민족의 전통과 결합시켜 주로 궁정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약기구를 설치하였다. 요·금시기에 의약조직기구를 설치한 경험은 元朝의 통치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제공되었으며, 또한 후기 왕조사회가 의약기구와 제도를 세우고 완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2) 원대 의약기구와 기능

① 의약관리와 惠民 기구

② 태의원의 구조와 기능

태의원은 원대 최고의 의정관리 기관이다. 至元 5년(1268) 5월 辛亥 초하루에 “以太醫院, …… 隸宣徽

37) 托克托 等奉勅撰. 金史 卷5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0*691.

38) 托克托 等奉勅撰. 金史 卷5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0*690.

院”³⁹)하고 “太醫院，秩正二品。掌醫事，制奉藥物，領各屬醫職。中統元年(1260)置宣差，提點太醫院事，給銀印。至元二十年(1283)，改爲尚醫監，秩正四品。二十二年(1285)，復爲太醫院，給銀印，置提點四員，院使，副使，判官各二員。大德五年(1301)，升正二品，設官十六員。十一年(1307)，增院使二員。皇慶元年(1312)，增院使二員。二年(1313)，增院使一員。至治二年(1322)，定置院使一十二員，正二品 同知二員，正三品；金院二員，從三品；同僉二員，正四品；院判二員，正五品晶；經曆二員，從七品；都事二員，從七品；照磨兼承發架閣庫一員，正八品；令史八人，譯史二人，知印二人，通事二人，宣使七人”⁴⁰)을 두었다. 이상은 태의원의 구성이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는 변화에 따라 인원의 선임과 직품 등도 수시로 규정하였다. 태의원 가운데 令史의 선임과 대우에 대해 정부가 “省擬太醫院令史，於各部令史並相應職官內選取”⁴¹)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太醫院系宣徽院所轄，令使人等，若系省部發去，考滿同諸監令史，擬正人品，自用者降等任用.”⁴²)하였다가 때문이다.

원대 태의원은 모든 의약사무를 주관하여 소속된 각 醫職을 통솔하고 순수한 의약관리기구로 바뀌었다. 태의원 관리의 품계로 보면 보편적으로 과거 어떠한 왕조보다 높았다. 따라서 위아래로 비교하던지 아니면 같은 시기의 다른 의약기구와 수평적으로 비교하던지 간에 이 시기 태의원은 품계 규격에서 실제 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두 크게 제고되고 강화되었다.

② 惠民藥局의 설치와 기능

惠民藥局(혜민국)은 원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그 이자로 약을 구입하여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이었다. “太宗九年(1237)始於燕京等十路置局，以奉

39)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6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2*72.

40)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8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689.

41)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3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593.

42)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4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613.

禦田闊闊，太醫王壁，齊楷等爲局周官，給銀五百錠，爲規運之本，世祖中統二年(1261)又命王佑開局”⁴³)하였다. 成都 路에 혜민약국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내리고 王佑를 西川 등의 路에 파견하여 醫儒와 僧道를 방문하여 약방을 수집하였다. 같은 해에 또한 “大都惠民局，秩從五品，掌收官錢，經營出息，市藥修劑，以惠貧民……受太醫院劄”⁴⁴)하도록 하였다. 中統 4년(1263)에 上都에 惠民司를 증설하고 “提點一員，司令一員……品秩並同上”⁴⁵)하였다. 그리고 中統시기 화폐 100兩마다 이자 1兩5錢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至元 3년(1266) 5월 庚子에 “勅太醫院領諸路醫戶，惠民藥局”⁴⁶)하게 하였다. 至元 14년(1277)에 태의원은 “定從六品秩，二十一年(1284)升從五品.”⁴⁷)하였다. “至元二十五年(1288)，以陷失官卒，悉罷革之。至成宗人德三年(1299)，又准舊例於各路置焉。凡周皆以各路正官提調，所設良醫，上路二名，下路府州各一名。其所給鈔本，亦驗民戶多寡，以爲等差……河南行省，二百七十能……江浙行省二千六百一十五錠……”⁴⁸)하였다. 至正 4년(1343) 2월 辛丑에 “四川行省立惠民藥局”⁴⁹)하였다.

원대에 혜민약국을 설치한 것은 빈민을 구제하고 죄수에 대한 의약 혜택의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지만 관리들이 부패하여 빈민들이 받은 구제와 실제 혜택은 매우 제한되었다. 혜민국은 전적으로 통치자가 백성의 인심을 얻기 위한 기구로 이는 각박함을 면치 못하였고, 진정으로 惠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43)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96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838.

44)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8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690.

45)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8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690.

46)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6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2*68.

47)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8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690.

48)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96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838.

49)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41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2*573.

◎ 廣惠司와 아랍약물원의 역할

광혜사와 아랍약물원은 모두 아랍의약 전문기구로 禦用하는 아랍약물을 조제하고 和劑하고 宿衛士와 京都에 있는 과부·홀아비·고아·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를 관장하였다. 원대에 아랍의약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또한 비교적 높은 지위를 부여한 것은 역사적 원인이 있었다. 먼저 元朝가 서쪽을 정벌할 때에 아랍의 의약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원나라 군사가 출정하여 싸울 때 대량의 의생과 약물을 확보 할 필요가 있었고, 원의 군대가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등지를 정벌하였는데 이들 지역 대부분은 이슬람교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때에 이 지역의 의약 즉 아랍의약도 元軍과 관계되었다. 한편으로 원군이 이 지역에서 아랍의약의 치료를 받은 것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쪽을 정벌하여 승리함에 따라 대량의 아랍약물을 中原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일부 아랍의 의생들도 중원으로 와서 의술을 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아랍약물이 중국에 전파되는데 조건을 제공하였다. 다음으로는 원대에 “西域侍衛親軍” 등 주로 아랍인으로 구성된 侍衛부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아랍 군사들은 그들에게 익숙하고 신뢰하는 아랍의약으로 치료 받은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元世祖 때에 西域醫藥司, 京師醫藥院, 廣惠司, 大都와 上都의 아랍약물원, 아랍藥物局 등 6개 아랍의약 전문기구를 잇달아 설립하였다. 이러한 기구의 창시자는 시리아 서부인 동로마제국에서 온 사람인 愛薛(1227~1308)이다. 「元史」에는 愛薛을 아랍 의생이라고 하였다. 그는 서역 여러 지역의 언어와 工·星·曆·醫에 능통하였다. 世祖 中統 연간(1260~1264)에 愛薛은 서역의 星歷과 의약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을 건의하였다. 世祖는 “中統四年(1263), 命掌西域星曆, 醫藥工司事, 後改廣惠司, 仍命領之”⁵⁰⁾라 하여, 서역의 星曆과 醫藥을 관장하는 일을 명하였고 나중에 廣惠司로 개명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명하였다. 廣惠司는 元代의 주요한 아랍의약 전문기관이었다. 광혜사의 구성원과 품

50)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134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4*418.

계는 “至元七年(1270)始置提舉二員. 十七年(1280)增置提舉一員. 延祐六年(1319)升正三品. 七年(1320)仍正五品. 至治二年(1323)復爲正三品, 置卿四員, 少卿, 丞各二員. 後定置司卿四員, 少卿二員, 司丞二員, 經曆, 知事, 照磨各一員”⁵¹⁾을 두었다.

광혜사의 주요 임무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어용하는 아랍약물을 조제하였다. 둘째는 아랍 약물로 宿衛士의 치료를 책임졌다. 특히 아랍인으로 구성된 侍衛부대의 병을 치료하였다. 셋째는 아랍약물로 수도의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였다. 요컨대 이는 아랍약물을 중국에 전파시킨 주요 기관이었다. 至元 정부의 관심과 지원 및 광혜사의 노력을 통하여 아랍약물은 중국에 널리 전파되었다.

광혜사 이외에도 아랍의약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구가 大都와 上都에 광혜사에 예속된 아랍 약물원이 있었다. 아랍약물원은 “秩從五品. 掌回藥事. 至元二十九年(1292)始置, 至治二年(1322)撥隸廣惠司. 定置達魯花赤一員, 大使二員, 副使一員.”⁵²⁾을 두었다. 아랍약물원은 주로 아랍약물을 수집, 저장, 가공하고 또한 광혜사에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나누어주는 약물을 제조하였다. 따라서 이는 아랍약물의 전파에도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

◎ 禦藥院(局)의 구조와 기능

禦藥院(局)은 약물제조와 저장을 주관하는 원대의 기관이다. 元代는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함에 따라 사방에서 보내는 공납이 나날이 빈번해졌고 그 중에 약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원 정부는 지원 6년(1269)에 어약원을 설립하여 “秩從五品. 掌授各路鄉貢, 諸蕃進獻珍貴藥品, 修造湯煎. 至元六年始置. 達魯花赤一員, 從五品, 大使二員, 從五品, 副使三員正七品; 直長一員, 都監二員”⁵³⁾을 두었다. 지원 10년(1273) 9월 “丙午, 置禦藥院”⁵⁴⁾하였다. 이외에 지원 10년

51)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8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689.

52)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8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689.

53)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8 文淵閣四庫全書·吏部·正史類. 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690.

(1273)에 “藥藥局秩從五品，掌兩都行匣藥餌 …… 大德九年(1305)分立行藥藥局，掌行匣藥物。本局但掌上都藥倉之事。定置達魯花赤一員，從五品；局使二員，從五品；副使二員，正七品。”⁵⁵⁾을 두었다.

이상의 기구들은 주로 공납한 각종 약물을 관리하고 제조를 책임지는 직책이다。太醫院과 어약원은 모두 元朝에 의약을 관리하는 최고 기관이었다。

② 궁정위생조직

① 황제의 藥用 의약조직

원조 통치자들은 음식요법을 중시하였다。“世祖即位，立尚食尚藥二局。”⁵⁶⁾하였다. 각 局에는 提點을 두어 황제의 음식과 의료를 주관하였다. 尚食局과 尚藥局은 제왕의 약물과 음식에 대해 관련되기 때문에 至元 20년(1354)에 “省并尚藥局爲尚食局，別置生料庫”⁵⁷⁾하였다. 이와 같이 상약국의 직책을 상식국으로 이전하여 상식국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때에 상식국은 주로 황제의 藥膳을 제조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변하였다. 부속된 生料庫 역시 상식국에 협조하여 황제의 의료와 藥膳에 사용되는 약물 및 기타 음식물의 원료를 수납하고 관리하는 상식국에 소속된 원료를 보관하는 부서였다. 상약국과 상식국을 합병하고 합병한 이후 기구의 명칭을 여전히 상식국으로 한 것은 이 시기 황제에 대한 의약보건의 중심이 食治의료, 藥膳보건으로 옮겨갔음을 말해주고 있다.

상식국 이외에 원조 전기에 궁정 안에 황제를 위해 전문적으로 어용약물을 제조하고 어용 藥餌를 받드는 기관이 한번 설치되었다. 그 중에는 “修合司，藥正司，秩從五品。達魯花赤一員，副使，直長各二員，掌藥六人。掌修合藥用藥餌。至治三年(1323)罷”⁵⁸⁾하였다.

또한 “行厘司藥局，秩從五品。達魯花赤一員，使，副使各二員。掌供奉藥用藥餌。至治三年(1323)罷”⁵⁹⁾하였다. 이상 修合司, 藥正司, 行厘司藥局은 모두 徽政院에 예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구 이외에 궁정 안에 또한 “禦香局，秩從五品。提點一員，司令一員。掌修合禦用諸香。至大元年(1308)罷”⁶⁰⁾하였다.

◎太子를 위한 의약조직

掌醫署(典醫署)는 태자를 위한 의약 등의 사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처음에는 詞事院에 예속되었다가 후에 徽政院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그 장관의 명칭은 掌醫監(어떤 때는 典醫監이라 칭함)이며 품계는 보통 정3품에서 종5품 사이에서 변동되었고, 그 아래에 설치된 의관은 達魯花赤, 卿, 太監, 小監, 丞 등이 있었으며 인원수는 보통 18명에서 24명 사이였다. 그 아래에 소속된 기구는 典藥局, 行典藥局, 廣濟提舉司 등이 있었다. 掌醫署는 동궁의 태의를 통솔하고 태자에게 바치는 藥餌를 조제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그 부속기구의 기능과 관원의 배치는 “典藥局，達魯花赤一員，大使，副使，直長各二員。掌修制東宮藥餌。”⁶¹⁾하였다. 그리고 “行典藥局，達魯花赤一員，大使，副使各二員。掌供奉東宮藥餌”⁶²⁾하였으며 또한 “廣濟提舉司，秩從五品。達魯花赤，提舉，同提舉，副提舉各一員，掌修合藥餌，以濟貧民”⁶³⁾하였다.

원대에 빈민을 구제하는 의약기관에는 惠民藥局, 廣惠司, 廣濟提舉司가 있었고 이러한 기관의 공통적인 기능은 의약으로 빈민을 구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도 일정한 차별이 있었다. 惠民藥局은 중앙과 지방에 모두 설치되어 있는 태의원이 이끄는 전문 의약 구체기구이다. 廣惠司는 어용하는 아랍의

54)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2*95.

55)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690.

56)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16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5*303.

57)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679.

58)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707.

59)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707.

60)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690.

61)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706.

62)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706.

63)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8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707.

약을 주관함과 동시에 京城 내에 돌보는 사람이 없고 빈한한 병자를 구휼하는 임무를 겸하였다. 廣濟提舉司는 太子詹事院의 명의로 빈민에게 의약품을 하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빈민을 구제하는 의약방면에서 유익한 업무를 하였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병든 수많은 백성들은 구제를 받는 것이 극히 제한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진 구제활동은 황제와 태자의 은덕을 어느 정도 선양하였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병든 수많은 백성들은 구제와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기회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통치자가 선양하는 은덕을 알기 어려웠고 심지어 원성도 많았다. 특히 질병이 유행할 때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③ 官醫提舉司와 그 역할

元朝정부는 의생을 찾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침으로 많은 의생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따라서 궁정 안에 많은 어용 의생들을 수용한 것 이외에 민간에도 많은 의생들이 있었다. 민간에 있는 개개 의생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원 정부는 전문 관리기구인 官醫提舉司를 설치하였다. 이 司는 “秩從六品, 提舉一員, 同提舉一員, 副提舉一員, 掌醫戶差役訛”⁶⁴⁾하였다. 司를 설치하지 않은 行省은 提 슈 혹은 太醫散官을 두어 관리하였다. 태의산관은 원대에 모두 15단계가 있었고(大夫 6단계, 郎 9단계) 그 품계의 순서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원대 醫散官의 품계 등급표

등급	官名	
종3품	保宜大夫	保康大夫
정4품	保安大夫	保和大夫
종4품	保順大夫	
정5품	保衝大夫	
종5품	保令郎	

64)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9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3*746.

정6품	成安郎	
종6품	成和郎	
정7품	成全郎	
종7품	醫正郎	
정8품	醫效郎	醫候郎
종8품	醫痊郎	醫愈郎

行省에 提舉司, 提領所를 설치하거나 혹은 태의산관을 파견하여 관리를 하는 것 이외에 행성 아래 路의 크기에 따라 提舉, 副提舉 등 수량에 따라 의관을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大都, 保定, 彰德, 東平 등 4路에는 提舉와 副提舉를 각 1명씩 두었고, 河間, 大名, 晉寧, 大同, 濟寧, 廣平, 翼寧, 濟南, 邶陽, 興和 등 10路에도 제거와 부제거를 각 1명씩 두었고, 衛輝, 懷慶, 大寧에는 제거 1명을 두었다. 이외에 각 提舉司 및 提領所는 醫正, 醫司 등의 의관을 늘여 파견에 대비하였다. 의관을 늘리는 이러한 방법은 관원들이 쓸데없이 넘쳐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大德 2년(1298)에 개혁을 단행하고 다시 새롭게 규정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州와 縣에 檢醫를 차출하여 세금과 醫戶의 다소를 조사하며 辦事處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提舉司를 통하여 의사에 밝고 청렴한 사람을 선발하여 충당하고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만 임용하였다. 제거사와 제령소가 설치된 곳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둘째. 府·州·司·縣에서 요역과 의정을 검사할 경우 현지에 있는 醫戶들 중에서 벤갈아 차출하여 파견하고 관할지역에서 함부로 차출하여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셋째. 醫官提舉司와 提領所는 세무조사와 송사를 맡는데 경우에 따라 1~2명의 司吏와 檢候를 증원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元典章』典章九, 吏部卷之三, 官制三, 醫官). 원대에 관의제거사의 설치는 봉건왕조사회에서 지방의정을 설치한 첫 시도이며 이는 개개 醫戶의 관리를 강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였다.

④ 醫學提舉司와 그 역할

의학제거사는 의학교육을 관리하는 원대의 전문 기관이다. 이司는 世祖 지원 9년(1272)에 처음 설치되었고 13년에 폐지되었다가 14년에 다시 설치되었다. 그 직능은 각 路의 의생이 배우는 교과서를 감수하고, 太醫敎官을 시험하고, 명의들이 의서를 교감하고, 약재를 검사하고, 태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각 路에 설립한 의학거제를 관리하는 것을 주로 관장한다. 의학제거사의 품계는 종5품이다. 또 提舉 1명과 副提舉 1명을 두었다.

원대 의학교육 역시 폐지된 것에서 중흥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찍이 世祖 中統 2년(1261) 여름 5월에 太醫院使 王猷는 의학이 오랫동안 황폐해져 후진들이 배우지 못해 조정에서 사람을 채용해도 배운 것이 전공이 아니어서 폐해가 아주 크다고 하여 兩宋의 제도에 따라 의학교를 설립하길 희망하였다. 같은 해(1262) 8월에 태의원에서 副使 王安仁을 보내 金牌를 수여하고 각 路로 가서 의학을 설치하게 하였으며 학교 부지는 각 州·縣에 있는 三皇廟 안에 선정하였다. 이로부터 원대 의학교육은 남송 말기에 폐지된 이후 다시 시행되었다.

원대 의학교육의 주관기구는 醫學提舉司이다. 그러나 태의원이 각기 소속된 醫職을 통솔하였기 때문에 提舉司에 대해서도 제약하였다. 그 이외에 의학제거사는 각 路에 설립된 의학교를 관리하였지만 각 路의 의학 교수는 太醫院提點(혹은 尚醫監이라 칭함)이 정하였다. 이밖에 禮部와 尚醫監은 의학교육 제도를 공동으로 연구하였으며 각 路의 總官府와 官醫提舉司는 그곳 의생을 추천하여 교수로 맡기는 작업에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 이외에 일부 路에도 의학제거사를 설치하여 지방교육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상의 이러한 기구들이 원대 의약교육의 관리체계를 공동으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학생의 고시에 대해 원나라 정부는 일련의 제도를 만들었다. 먼저 수험생의 자원에 대하여 정부는 주로 적을 둔 醫戶 및 약방을 개설하여 의술을 행하고 약을 파는 사람의 자제들 중에서 선발하여 합격한 자를 가르쳤고, 개별적으로 양가집 자제들도 배우길

원하면 입학할 수도 있었다. 입학한 의학생들은 檢醫, 差占 등 자신의 부역은 면제되었다. 그 이외에 尚醫監에 등록하여 신고하고 졸업할 때 성적에 따라서 과별로 임용되었다. 의학생의 선발업무는 주로 각 路의 관의제거사 혹은 제령소에서 의학에서와 같이 교수하였다. 다음으로 의학생들이 배우는 경서와 고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다. 모든 의학생은 반드시 『詩』·『書』·『禮儀』·『春秋』에 정통해야 하고 정통하지 못하면 의술을 행하는 것을 금했다. 의학과목은 기존 13과에서 10과로 통합하고 각 과목은 모두 상응하는 학습내용과 고시과목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각과의 학생들은 모두 『素問』·『難經』·『神農本草經』(祝由書禁科는 『신농본초경』을 배우지 않는다)을 배웠다. 그 이외에 科에 따라 『聖濟總錄』에서의 각 분야와 『傷寒論』·『千金翼方』을 배웠다. 예를 들어 大方脈 雜醫科에서는 『성제총록』 83권과 『상한론』을 배우고, 祝由書禁科는 『성제총록』 3권과 『천금익방』을 배우고, 그 이외의 과는 모두 『성제총록』에서 각자 卷數를 배우는데 小方脈科는 16권, 風科는 16권, 產科兼婦人雜病科는 16권, 眼科는 13권, 口齒兼咽喉科는 8권, 正骨兼金鍊科는 4권, 瘰腫科는 11권, 鍼灸科는 4권을 배운다. 그 이외에 의생의 고시 선발에 대해서도 약간의 방법을 규정하였다. 지원 8년(1271)에 省部를 거쳐 『選試太醫法度』 6권을 확정하였다. 3년마다 한 차례 태의를 선발하는 시험을 칠 것을 규정하였고, 응시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먼저 각 路의 總管府에 하달하여 각자 그 과에 따라 배운 醫經을 시험하였다. 각 路는 보통 8월에 고시를 거행하여 100명을 뽑고 시험에 붙은 사람은 다음 해 2월에 大都로 가서 省試를 치렀고 성시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조정에 보고하고 內醫에 충당하였다. 성시는 보통 30명을 뽑고 3甲으로 나누어 1甲은 태의를, 2갑은 副提舉를, 3갑은 교수를 담당하였다. 府試에 합격한 자는 路에 따라 學官으로 보충하고 성시에 따라 임용되었다.

이밖에 고시선발을 통해 태의원 의생들을 보충한 것 이외에 현직에 있는 태의 등의 의관에 대해서도 시험을 치르도록 규정하였다. 仁宗 延祐 3년(1316)에

금후 3년마다 한차례 과거를 보아 太醫, 教諭, 學錄, 學正, 教授 등을 시험할 것을 규정하였다. 수도에 있지 않는 提領과 提舉가 위로 부임할 때 반드시 醫義를 시험하였고 불합격한 사람은 의술을 행하지 못하고 다만 醫戶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의생의 시험선발이 점차 엄격해지기 시작하였다. 불합격하거나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 의생과 教學 인원은 처벌을 받아야 했다. “諸醫人於十三科內, 不能精通一科者不得行醫。太醫院不精加考試, 輒以私妄舉充隨朝太醫及內外郡縣醫官, 內外郡縣醫學不依法考試, 輒縱人行醫者, 並從監察禦史廉訪司察之”⁶⁵⁾하였고, “各路醫學大小生員, 不令坐齋肆業, 有名無實, 及在學而訓誨無法, 課講鹵莽, 荷應故事者, 教授, 正, 祿, 提調官罰俸有差”⁶⁶⁾하게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정비를 거친 뒤에 의학교육은 대략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원대 의학교육에서 뚜렷한 변화는 正骨兼今鑄科가 독립된 科로 된 것이다. 남송시대에 折傷과 瘡腫을 합병하여 하나의 과가 되었고 또한 金鑄과 書禁을 합하여 하나의 과가 되었으며, 正骨兼金鑄은 아직 전문과로 독립되지 않았다. 송대 말기 원대 초기에 대규모의 기마 전쟁으로 골절, 창상, 타박으로 인한 부상자가 대량으로 늘어나 正骨과 折傷의 생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대의 의학교육에 正骨兼金鑄科를 중설하였다. 이 이외에 원대 의학교육에서 정기적으로 의학경험을 교류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지원 22년(1285)에 정부가 규정하길 매월 초 하루, 15일에 의학생과 醫戶의 의생 등이 모두 三皇廟(의학교)에 모여 먼저 先醫들에게 향을 피워 예배를 드린 다음 각자가 치료하여 낫게 한 환자의 성명, 질병, 치료방법, 처방에 대해 말하고, 그 路의 교수에게 제출하여 연말에 우열을 평가 심사하여 등급을 가려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채용에 대비하였다.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가지는 집회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의료경험을 교류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 의생들의 폐단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형식은 지방의 민간의생을 관리하는데 좋은 경험을 제공하였다.

⑤ 軍陣醫藥 設置

원대 정부는 군대를 중시했기 때문에 군대의 의약 위생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일련의 조치를 잇달아 채택함으로써 군진 의약을 강화시켰다. 中統 원년(1260)에 西征軍은 대부분의 군사가 아랍의약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廣惠司와 上都, 大都 아랍약물원 3곳에 아랍의약기관을 잇달아 설립하여 아랍군사의 의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었다. 지원 15년(1276) 3월에 또한 군대에 병든 병사가 있으면 뛰어난 醫工으로 하여금 약으로 치료하도록 규정하였다(『元典章』典章 39軍役). 몽고와 한족군대가 여러 해 계속 출정하였는데, 여비는 군사 스스로 해결하여 돈과 말이 있는 군관은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일반병사들은 여비나 말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길에서 굶거나 병으로 죽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世祖 至元 7년(1270)에 출정하였다가 돌아오는 군인이 지나가는 지역의 현지 관원들은 식량을 지급하고 병든 병사에게는 의약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각 翼에 安樂堂을 설치하고 유능한 의사를 초빙하여 병을 치료하게 하고 건강한 사람을 선발하여 시중을 들도록 하였다. 병든 군사 5명에 각 1명을 배치하여 그들을 위해서 탕약을 달았다. 지원 21년(1284)에 세조는 또한 조령을 내려 각 翼에 安樂堂을 설치하고 병으로 죽은 군인의 다파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병든 병사는 귀향하는 도중에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이후 원 정부는 또한 大德~延祐 연간에 병든 군사들을 위해 여러 차례 조령을 내려 月糧 이외에 新米를 따로 지급하고 관청에서는 의약을 지급하고 죽은 자는 관청에서 매장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이와 같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병사들은 건강 회복에 보장을 받았고 따라서 전투력도 강화되었다.

65)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103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4*86.

66)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103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4*85.

4) 遼·金·元代의 의약정책과 의학발전 과의 관계

(1) 骨傷科의 발전

요·금·원은 모두 북방의 유목민족이 세운 왕조이다. 유목과 기마생활은 정착된 농경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절과 탈구 등이 발생하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은 골절 손상을 치료하는 방면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후 요·금·원이 대외적으로 전쟁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 기병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였고 따라서 跌仆損傷과 骨折脫臼 환자들이 날로 늘어갔다. 특히 대규모 전쟁으로 인하여 전장에서 수많은 골절 부상자를 구급 치료해야 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骨傷科 의사의 수요량이 갈수록 늘어났고 골상과 기술의 수준도 제고시킬 필요가 절실했다. 요·금·원의 통치자들은 군대의 의약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하였다. 의사들을 널리 찾아 보호하고 軍醫의 배치를 강화하였다. 원대에 이르러 정부가 골상과 의사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에 독립된 正骨兼金鑄科를 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골상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원대 의사인 危亦林은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치료경험을 널리 수집하고 또한 자신의 경험을 결합하여 『世醫得效方』『正骨兼金鑄』에 골상과의 치료기술과 방약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의 업적은 원대에 골상과가 발전한 수준을 대표한다.

(2) 외국 의약의 유입과 본초학의 발달

원대는 승승장구하였고 영토도 전례 없이 확장되었다. 몽고 기병은 아시아, 유럽 각지의 영토를 점령하여 동·서방의 문화교류에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의학과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동아시아,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많은 국가들과 광범하게 의약이 교류되었다. 특히 각지의 진귀하고 귀중한 약물들이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됨으로써 본초학이 매우 풍부해지게 되었다.

의약교류에 있어서는 서아시아,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지역과의 교류가 더욱 빈번하였다. 원대 정부는 아랍의약이 중국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廣惠司, 上都, 大都 아랍약물원 등 전문 기구를 잇달아 설립하였다. 황제의 주위에도 아랍 어의를 두었고, 수많은 아랍 의사들이 중국각지에서 의업을 행하였다. 지원 21년(1284)에 원 세조는 중원의 본초는 누락된 것이 많고 또한 四方의 약이 없다고 보고 박식한 의사를 천하에 널리 찾아서 상의케 하였는데, “癸酉, 命翰林承旨撒裏蠻, 翰林集賢大學士許國禎, 集諸路醫學教授增修本草.”⁶⁷⁾하게 하였다. 4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 『至元增修本草』이다. 아쉽게도 유실되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알 수 없다. 원나라 말기에 失轍之 개인이 편찬한 『大元本草』에 外部, 餘部를 전문으로 두어 수많은 域外 약물을 수록하였다. 요컨대 이 시기 아랍약물이 중국에 전파되어 중국 본초학 지식을 풍부하게 하였는데, 현존하는 『回回藥方』에 기재된 것이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3) 민간의생의 관리

원대 정부는 의생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하여 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임과 동시에 의술과 침술을 함부로 행하는 가짜 의사의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가짜 의사가 환자들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두절시키기 위해 민간 의사들의 의료수준을 높이고 정부가 醫戶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원 정부는 각 行省, 路府 등의 지방에 官醫提舉司, 提領所 등 의호를 관리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기구의 설치로 문서에 등재된 의호들의 差役과 詞訟의 관리를 강화하였고 또한 정기적으로 의료경험을 교류하는 제도를 통하여 가짜 의사의 범람을 방지하였고 또한 문서에 등재된 민간의사들의 수준도 상당히 제고시켰다. 관의 제거사의 설치는 醫政史에 있어서 최초의 시도로 지방의정 관리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조치였다. 원대 관의제거사의 장기적인 직능과 효과에 대해서 실증 할만한 자료는 없지만 이러한 의정 설치 자체와 초보적인 실천은 이것이 비교적 좋은 관리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67) 宋濂 等奉勅撰. 元史 卷13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92*177.

(4) 藥膳과 食療法

역대 제왕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장생을 추구하였다. 진시황과 한 무제는 장생불사하는 약을 찾았으나 결국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했고 이는 후세 황제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원대의 황제들은 비교적 현실적이어서 그들은 음식물의 배합을 중시하였고 합리적인 飲膳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延年益壽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다. 원대 통치자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궁정에 飲膳太醫를 두고 藥膳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을 연구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忽思慧가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영양학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음식물의 영양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음식물의 변질과 청결하지 못해 몸을 해치는 것에 주의하도록 일깨웠고 아울러 의학에 처음으로 “飲食物中毒”이라는 말을 도입하였다. 이밖에 음식으로 調養하는 것이 먼저이고 약물치료는 뒤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忽思慧의 풍부한 영양학지식과 약선지식이 『飲膳正要』에 실려 있으며 이는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영양학 전문서이다. 원대 정부가 약선을 중시하여 忽思慧 등이 食療경험을 정리하여 『飲膳正要』가 세상에 나오게 됨으로써 食療法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5) 遼·金·元代 의정의 형성된 원인

원대 의정에서 의약기구들이 번다하고, 기능이 증복되고, 대부분 상부기관에 예속되어 있어 통일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등이 나타난 문제점은 주로 3가지 방면에 원인이 있었다.

첫째. 요·금·원 시기에 남북의 문화가 교류 융합됨으로써 남북의 의약기구가 뒤섞여 결합되었다. 통치 계급은 모두 북방민족이었으나 괴통치자의 민족은 漢族이었다. 북방민족과 한족은 모두 자신의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한족 문화는 역사가 유구하고 문명의 수준이 북방민족보다 앞서 있었다. 외래문화에 대해 漢文化는 다른 민족의 문화보다 흡입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보다 강하였다. 그러나 요·금·원은 모두 소수민족의 통치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밖에 통치의 합법성을 표방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자신의 민족문화를 선양시켰고 자신의 문화가 전체 문화의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조직과 시행에 있어서도 자기 민족을 관리로 삼고 자신의 관리명칭을 그대로 답습하여 기존의 조직형식으로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북방문화에 대한 한문화의 강한 충격과 통치자의逆反정책 등 여러 요인이 반복적으로 대결하고 성숙하여 각종 문화전통에 공존하고 뒤섞여 결합됨으로써 어떤 방면에는 조화를 이루고 어떤 방면은 불협화음을 이루는 상태가 형성되었다. 의약기구가 많아지고 기능이 증복된 것은 이러한 상태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어약을 조제하여 바치는 기구에 修合司, 藥院 등 5개 기구가 있었다.

둘째. 요·금·원 모두 전통적으로 유목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의약기구 설치에 있어서 약물을 제조하는 고정된 기구 이외에 이와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으로 주관하였다. 예를 들어 行匣司藥局, 行典藥局 등이 있었다. “行”자에 대하여 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집행과 파견의 의미이다. 태자의약기구를 예로 들면 行典藥局은 典藥局의 일부기능을 실행하거나 혹은 전약국에서 파견된 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약국에서 태자의 藥餌를 조제하고 행전약국도 태자의 약이를 관장한다. 이와 같이 각기 직능을 맡아 서로 견제하여 태자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 다른 하나로는 “行”은 행동의 의미이다. 즉 유목생활과 기마전쟁에 따른 필요에 적응하기 위해 태자가 어디로 가면 의관도 따라서 옮겨 다녔다. 태자를 위해 약을 제조하는 고정되어 있는 기관의 명칭이 “典藥局”이라면 태자를 따라 전투하고 수시로 약물을 공급하는 기구가 “行典藥局”이었다. 후자는 전자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금 원시대의 실제상황에도 부합된다고 보인다.

셋째. 요·금·원은 모두 군사전제주의 정치체계였기 때문에 의정조직기구의 설치와 의약정책조치의 제정에 있어서 협조적이고 주도면밀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금대의 惠民司는 탕약을 주관하지만 禮部에

예속되어 있었고, 원대에는 빈민을 구제하는 의약기구인 惠民醫藥局이 있으면서 또한 태자의 명의로 설립한 廣濟提舉司가 있었다. 이밖에 아랍약물로 시혜를 베푸는 廣惠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빈민을 구제하는 의약기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정부에 대해 말하자면 통일된 조직력과 협조가 결핍되어 있었다. 혜민약국은 태의원에 예속되고, 광제제거사는 詞事院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광혜사는 아랍의약 전문기구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세 기구들은 모두 약물을 시혜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모두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의약구체와 구휼에 대해 전반적인 고려와 통일된 조치가 부족하여 이러한 업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역병이 발생했을 때에 혜민의약국 등의 기구들이 백성에게 의약을 베푸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원대에 의생의 지위가 제고된 원인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통치계급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의학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힘썼다. 그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의약을 중시하고 의생을 아끼게 하였다. 원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 한의약학에 큰 흥미를 나타내었고 다른 민족의 의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원 통치자는 잔혹한 전쟁 중에서도 그 나라 의사를 보호하고 좋은 대우를 해주어 그들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였다.

둘째. 의약은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이러한 직업적인 성격이 의생에 대한 통치자들의 경계심과 반감을 줄이고 비교적 높은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다.

셋째. 원 통치자들이 무력을 중시하여 한족의 통치경험을 경시하고 군사적인 전제정치로 통치를 유지하려고 기도함으로써 문관에 대한 기구 설치가 충분치 못하였다. 이밖에 원대에는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급적인 압박과 동시에 민족적인 압박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상의 요인으로 원대의 보편적인 사회풍조는 지식인에 대해 존중하지 않았고 유생의 지위는 매우 낮았다. 한족 지식인은 중용되지 못하였고 벼슬길로 나아갈 희망이 없었다. 文官儒士들은 지

위가 낮아지고 숫자도 줄었고 상응하여 능력이 있는 의생들의 지위와 봉록이 높았다. 이상의 3가지 원인으로 인해 원대 의생들의 지위는 보편적으로 높았고 또한 궁중 의관의 품계과 봉록도 다른 왕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官醫提舉司 설치는 원대 의정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원이 통치한 지역이 매우 광활하여 중앙의정기구 아래에 지방의정을 관리하는 기구를 전문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 이외에 원대에 민간의생들이 많아 그들의 差役과 詞訟 등에 도 전문기구의 관리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의생을 사칭하고 함부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아 전문기구가 단속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 이상 모두 관의제거사를 설치한 객관적인 원인들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원인 이외에 원 통치자들은 경험과 판단에 근거하여 이러한 기구의 설치를 결정한 의정관리 사상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원대 통치자가 이러한 관리사상이 없었다면 이러한 기구 역시 원대에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III. 결 론

본론의 연구를 통하여 논자는 遼·金·元代의 醫政에 대한 간단한 분석과 조사를 통하여, 의정에 있어 정책, 기구, 의학의 발전, 의정형성 원인 등에 관한 윤곽을 아래의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였다.

1. 남북의 의약정책에 관하여 요약하자면, 요·금·원은 북방민족이 세운 정권이다. 요와 금은 양송과 대치한 왕조로 통일하지는 못했다. 元朝은 통일을 실현하였지만 통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요·금·원 세 왕조의 공통적인 특징은 남북문화의 광범한 교류이다. 이 시기에 의약정책 방면에 나타난 것은 당송의 의약정책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자 민족의 의약정책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의약정책은 뒤섞여 결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결합은 왕조사회의 의정내용을 풍부하게 하여 경험

을 누적시켰다.

2. 남북의 의약기구에 관하여 요약하자면, 壽·金·元이 의약조직과 기구를 설치한 것은 의약정책을 관찰하고 실행시키기 위해 채택한 조직적인 조치이다. 이들이 제정한 의약정책은 각 민족의 의정경험과 당송 이래로 한족통치자들의 의정경험이 서로 결합된 산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는 남북에 원래 있던 기구를 혁신하여 취사선택하고 또한 뒤섞어 결합시킨 산물이기도 하다. 太醫院, 湯藥局, 行禦藥院, 行匣司藥局, 行典藥局, 官醫提舉司, 醫學提舉司 등의 기구와 각 의약기관에서 達魯花赤 등 의관 설치는 모두 북방민족의 문화적인 전통과 壽·金·元 군대가 유동하면서 전투하는 필요에 따라 창설되고 발전된 것들이다. 그러나 尚藥局, 太醫局, 惠民局 등의 기구와 翰林醫官, 醫學教授 등 의관의 설치는 당송시대 의정을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壽·金·元 시대에 남북문화의 광범한 교류와 융합이 의약조직기구에 특유의 형식이 생겨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형식이 만들어진 것은 왕조사회의 의약조직 체계를 발전시키고 완비시키는데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3. 遼·金·元代의 의약정책과 의학발전과의 관계에 있어 영향을 미친 이유로는 骨傷科의 발전, 외국 의약의 유입과 본초학의 발달, 민간의생의 관리, 藥膳과 食療法등이 있지만, 학술논쟁을 유발시킨 요인은 가장 크다. 즉 壽·金·元은 군사전제주의 정치제도에 기초한 왕조이며 이들의 흥망성쇠는 대부분 전쟁의 승패가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전쟁을 확산시키거나 통일 후 치국안민을 막론하고 壽·金·元의 통치자들은 군사적인 專制에 정력을 주로 집중시켰다. 과학문화에 대한 태도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정책을 세우지도 않았고 또한 속박하거나 말살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일종의 방임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는 과학연구와 기술개조 등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적

이고 분산된 기술경험의 누적과 학술 교류와 연구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의약학의 발전은 壽·金·元 시기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풍부한 경험을 쌓았지만 그러나 학술적인 발전과 제고는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러므로 壽·金·元 정부가 과학문화에 대한 방임적인 태도는 바로 의약학 발전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가 의생을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은 민간의생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대량 학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의료활동이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비교적 자유롭게 학술교류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전쟁이 빈번하여 백성들은 흩어져 유랑하고 젊주림과 추위로 병든 사람과 질병의 종류가 대량으로 증가하여 기존의 이론과 송 정부가 반포한『局方』 등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 시기 의가들은 임상경험을 많이 쌓고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여 학술논쟁의 국면이 나타나게 되었다. 金이 관할한 지역에 살았던 劉完素, 張從正, 李杲와 元代의 朱丹溪가 이 시기 학술논쟁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들의 학술적 논쟁은 후대 의학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4. 壽·金·元의 의정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즉 壽·金·元은 모두 북방 민족이 세운 정권이다. 遼·金의 의정경험은 元代가 계승하여 총결하였으며 당송의 의정 전통도 원대에 취사선택되었다. 따라서 원대의 의정은 실제로 壽·金·元의 모든 의정을 총결한 것이다. 원대의 의정은 正反 두 방면의 경험과 교훈이 있다. 官醫提舉司의 설치는 개인 의생의 관리를 강화하고 가짜 의사가 함부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가짜 약물이나 독약을 판매하는 것에 타격을 주어 지방의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는 원대의 성공적인 의약관리 조치였다. 醫學提舉司가 개인 의생과 의학생에게 정기적으로 학술교류를 시킨 제도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의학생은 임상경험을 배울 수 있고 개인 醫戶는 이론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었으며, 이밖에 가짜

의생의 의료행위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원대에는 의관의 품계 봉록과 사회적 지위가 대체로 높아 다른 어떠한 왕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는 의학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金元시기 의정의 가장 큰 단점은 의약기구가 대부분 상부기관에 예속되어 통일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 의약관리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 이외에 빈민의료에 대한 정책적인 보장이 결핍되어 있었고 고정된 의료조직도 없어 특히 역병이 급속히 만연할 때 효과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명에 큰 소실을 초래하였다.

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12. 托克托 等奉勅撰. 金史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13. 景仁文化社 編. 新元史. 서울. 景仁文化社. 1983.

참고문헌

1. 金基郁, 朴炫國, 朴晶禧, 梁峻.. 秦漢시기 醫政史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2).
2. 朴炫局, 金基郁, 朴宣柱, 梁峻. 魏晉南北朝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2).
3. 金基郁, 朴炫國, 金在哲. 兩宋時期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3).
4. 朴炫局, 金基郁, 鄭城采. 隋唐五代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2006. 19(4).
5. 朴炫局, 金基郁, 이병옥. 中國科學技術史(醫學編). 서울. 一中社. 2004.
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元典章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7. 洪元植, 윤창렬.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8. 李經緯, 林昭庚. 中國醫學通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9.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10. 托克托 等奉勅撰. 遼史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11. 宋濂 等奉勅撰. 元史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